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4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<신설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,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설정될 수 있다. 이 경우 제42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. 1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2. 트러스톤 사모 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 3. 트러스톤 칭기스칸 플러스알파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4. 트러스톤 칭기스칸 퇴직연금 증권자투자신탁[주식] <u>5. 트러스톤 재형 칭기스칸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</u>
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② (생략)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~5. (생략) <신설>	제43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<u>6. 법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</u>
<신설>	<u>부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.</u>